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08

2021. 11. 24.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4. 이호귀 의원 등 8명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호귀 의원)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무대리에 대한 목적·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효섭)

○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강남구청장에서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적용받던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대해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로 분리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규칙의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됨

○ 다만, 제정안 접수(2021. 11. 4) 이후 중앙부처의 표준안이 시행되어 일부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수정의견(안)**

제 정(안)	수 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삭제>**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서울특별시 ---.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국장)이 ---.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
제4조(지정대리) ①(생략) ②제1항에 ---.	**제3조(지정대리)**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08호

제안일자 : 2021. 11. 24.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대리인을 부의장으로 수정함

2. 수정내용

가.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수정함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순서 및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제4조제2항, 안제5조)

다. 제명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통일함(안 제3조, 안 제3조제2호)

라. 행정안전부 권고안(2021. 10. 20.)을 반영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대리인을 사무국장에서 부의장으로 함(안 제3조제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으로 한다.

안 제2조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안 제2조로 하고, 안 제2조(종전의 제3조) 중 “의장 또는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회의 사무국장(국장)”을 “부의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의 사무국장(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안 제4조를 안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안 제5조를 안 제4조로 하고, 안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삭 제>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국장)이 대리한다.	1. ----------부의장----------.
2. 의회의 사무국장(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2. 사무국장----------.

제4조(지정대리) ① (생 략)	제3조(지정대리) ① (원안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이호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8

발의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이호귀·박다미·이향숙·이도희·김형대·한윤수·전인수·김현정(이상8인)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등이 개정('22. 1. 13.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대리에 대한 목적·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

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직무대리명령서

1. 피대리 직명 :

2. 대리자 직, 성명 :

3. 대리기간 :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